

## ESG 위원회 규정 ( 주한 화 )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ESG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# 제 3 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(ESG) 정책과 윤리경영 및 준법통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이사회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재심사 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#### 제 4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는 이사회 내 심의기구이며, 이사회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.

#### 제 5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함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이 중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
#### 제 6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호선으로 독립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신병이상, 해외여행, 기타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정한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 7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# 제 2 장 회 의

#### 제 8 조 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

ESG 위원회 규정 ( 주한 화 )

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9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회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개최일을 정하고 그 3 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우편(E-mail 포함), 모사전송(FAX)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의안제출)

- ① 회사 내 각 부서는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를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을 검토하여 본 규정에 의한 위원회 부의사항인 경우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 12 조 (결의방법)

- ① 특별히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심사 후 재결의 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- ① 사내 준법통제활동 실적 검토 및 준법경영정책 심의
- ② 온실가스, 유해물질 저감 등 친환경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
- ③ 개인정보보호, 작업장내 안전관리 및 성평등 보장 등 근로환경 개선활동 검토 및 사내 인권보호 정책 심의
- ④ 공정경쟁,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정책활동 검토 및 정책목표 심의
- ⑤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주주의견 수렴결과 검토 및 주주환원정책 심의
- ⑥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
ESG 위원회 규정 ( (주)한 화 )

제 14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의사록)

-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제정 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

제 5 조 및 제 6 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